

1. 상담 내용

이혼한 전 남편의 성을 쓰고 있는 자녀의 성을 지금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담해 드렸습니다.

우리 민법 제781조 6항에 "자의 복리를 위하여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전남편의 동의가 없더라도 성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성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담을 요청하신 분도 전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아예 안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를 알아봐 드렸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관할 법원(사건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 합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자료입니다.

(신청인 1인당 5천원의 인지료와 송달비용이 듭니다.)

2. 생각해 볼 문제

자녀가 성 변경을 하여도 주민등록등본이나 기타 서류에 자녀는 재혼한 남편의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므로

여전히 재혼 가정임을 표시하는 외관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